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04. 2. 3(화)

관광건설위원장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월 20일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(2004. 2. 2)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꺽 연 참)

### 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 자연학습과로 편제되어 운영하였으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지도 감독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어 관리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자연학습원의 지도·감독부서 조정
  - “산림환경연구소장”을 “체육청소년과장”으로
  - “소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-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  
- 자연학습원의 지도·감독부서의 조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소장을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붙임서류 :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  
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체육청소년과장(이하 “과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내지 제4항, 제9조제2항·제3항 및 제11조제1항중 “소장”을 각각 “과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제9조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소장은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 ..... .....<u>과장</u> .....</p> <p>③과장 ..... ..... ..... .....</p>
<p>제11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~2 (생략)</p>	<p>제11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① <u>과장</u>..... ..... .....</p> <p>1~2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1조(문화관광국)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4. 건전 청소년 육성

### 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

제13조(문화관광국에 두는 과)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, 체육청소년과, 관광과, 건축문화과를 둔다.

- ②~③(생략)

④체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1. 자연학습원 지도감독 업무